

2. 地價公示 및 土地등의 評價에 關한 法律施行規則中 改正令

建設交通部令 第74號 1996. 8. 2

주요 골자

- 가. 국민이 용이하게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신청에 관하여 규정함(제4조의 6).
- 나. 감정평가사시험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을 6월간 강의·논문제출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교육훈련과정과 6월간 현장실습근무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실무훈련과정으로 구분함으로써 감정평가사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(제8조의 2).
- 다.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사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, 처분명 및 처분사유 등을 관보에 공고함(제10조의 2).
- 라. 각종 서식을 법령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개선함.

개정이유

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(1995. 12. 29, 법률 제5108호)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,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개정내용

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

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항 제3호 중 “자치구의 구청장”을 “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

하 같다)”로 하고, 동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기타 사실확인에 필요한 서류

제4조의 2 내지 제4조의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 2(검증의뢰) ①영 제12조의 4 제1항에서 “지가형황도면”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산정지가,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 및 당해 연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필지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.

②영 제12조의 4 제1항에서 “지가조사자료”라 함은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조사 및 기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.

제4조의 3(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) 영 제12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의 제출은 별지 제4호의 2 서식에 의한다.

제4조의 4(확인) ①영 제12조의 7 제1항 각호의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표준지 대비 개별공시지가 명세 : 별지 제4호의 3 서식
2. 전년 대비 지가변동 명세 : 별지 제4호의 4 서식
3. 시·군·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명세 : 별지 제4호의 5 서식

제4조의 5(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

서) 영 제12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 6 서식에 의한다.

제4조의 6(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)

①법 제1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·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신청은 별지 제4호의 7 서식에 의한다.

③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·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.

제5조 중 “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자격수첩”을 “공무원증 또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자격수첩”으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실무수습)”을 “(실무수습신청등)”으로 하고, 동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,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21조의 규정

에 의하여 합격자를 공고하는 때에는 실무수습신청기간 및 실무수습기간 등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.

제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 2(실무수습의 시행) ①실무수습은 교육훈련과정과 실무훈련과정으로 나누어 시행하되, 감정평가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실질적으로 습득하도록 한다. ②교육훈련과정은 6월간 강의·논문제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, 실무훈련과정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6월간 현장실습근무의 방법으로 시행한다.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1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무훈련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실무수습의 방법·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
제9조 제2항 중 “신고인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의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.”를 “별지 제15호 서식의 감정평가사자격수첩에 공무원증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증명용 철인을 압인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”로 하고, 동조 제3항 중 “변경(주소의 변경을 제외

한다)”을 “변경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 2(자격취소의 공고등) ①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자오간에 감정평가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.

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자격취소를 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.

1. 감정평가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
2. 처분명
3. 처분사유

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 : 별지 제20호 서식
가. 영 제27조 제1항 각호의 서류 각 1부
나. 구성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이 날인된 규약 각 1부(합동사무소에 한한다)
2. 감정평가사사무소등록사항변경신고서 : 별지 제23호 서식
가. 대표자 선임관계서류 및 취임승낙서 1부(합동사무소의 대표자가 변

경되는 경우에 한한다)

나. 신규 소속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소속감정평가사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)

다. 기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

제12조를 삭제한다.

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동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.

- 1. 영 제31조 제1항 각호의 서류 각 1부
- 2. 사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날인된 가입동의서 각 1부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(합병등의 인가신청서)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정관 변경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정관변경(합병)인가신청서에 영 제34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 2(정관변경등의 신고) 법 제19조 제3항 단서 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정관변경 또는 해산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변경일 또는 해산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

제29호의 2 서식의 감정평가법인정관변경(해산)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이유서 1부
- 2. 정관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원총회 의사록 사본 1부
- 3. 신·구정관 각 1부(정관변경의 경우에 한한다)

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감정평가의뢰인이 감정평가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감정평가서의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재교부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.

제18조의 2를 삭제한다.

[별표]를 삭제한다.

별지 제2호 서식의 공시지가란 중 “공시지가(개별지가)”를 “공시지가(개별공시지가)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의 2 서식의 의견청취일자란 중 “지방토지평가위원회”를 “시·군·구 토지평가위원회”로 하고, 동서식의 구비서류란중 “의견청취요구서”를 “의견청취요청서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 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중

“지가조사과”를 “지가조사1과”로 한다.

별지 제4호 서식 앞면의 처리기간란 중 “2월”을 “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”로 하고, 동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중 “지가조사과”를 “지가조사1과”로, “토지평가위원회”를 “중앙토지평가위원회”로 한다.

[별지 제4호의 2 서식] 내지 [별지 제4호의 7 서식]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[별지 제6호 서식]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8호 서식의 본문 중 “수여함”을 “수여합니다.”로 하고, 동서식의 규격 “190mm×268mm”를 “210mm×297mm”로 한다.

별지 제10호 서식의 앞면 중 “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”를 “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 제1항”으로 하고, 동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중 “토지정책과”를 “지가조사1과”로 한다.

별지 제12호 서식의 본문 중 “수료함”을 “수여합니다.”로 한다.

[별지 제13호 서식] 내지 [별지 제15호 서식]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6호 서식 뒷면 및 별지 제17호 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중 “토지정책과”를 각각 “지가조사1과”로 한다.

별지 제18호 서식의 앞면 중 “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(합동)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받고자 신청합니다”를 “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감정평가사업무인가를 신청합니다.”로 하고, 동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중 “토지정책과”를 “지가조사1과”로 한다.

별지 제19호 서식의 본문 중 “증명함”을 “증명합니다.”로 한다.

[별지 제20호 서식] 내지 [별지 제22호 서식]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23호 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서식 뒷면의 처리기간란 중 “토지정책과”를 “지가조사1과”로 한다.

1. 대표자선임관계서류 및 취임승낙서 1부(합동사무소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)
2. 신규 소속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소속감정평가사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)
3. 기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

[별지 제24호 서식]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[별지 제25호 서식]을 삭제한다.

[별지 제26호 서식] 및 [별지 제27호 서식]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28호 서식 중 “증명함”을 “증명합니다.”로 한다.

[별지 제29호 서식]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[별지 제29호의 2 서식]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30호 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중 “토지행정과”를 “지가조사1과”로 한다.

별지 제31호 서식 중 “인가함”을 “인가합니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